



Europe

Asia

North America

Oceania

Africa

South America



KIEP 기초자료
19-07

2019년 6월 17일

APEC 사업 추진체계와 활용방안

박은빈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연구원(ebpark@kie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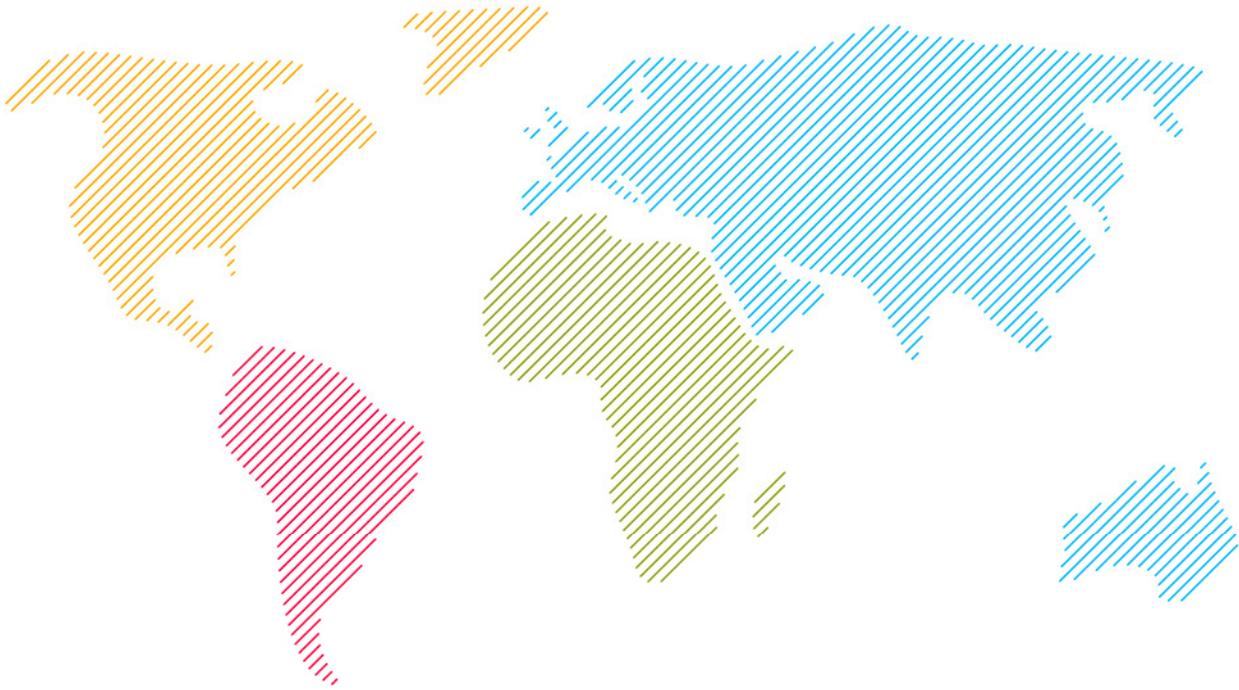
APEC 사업 추진체계와 활용방안

요약

- ▶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 협력,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해 매년 80~100개 정도의 사업을 편당하고 있으며 1993년 제1차 정상회의 이후 약 2,200개의 사업이 추진됨.
 - APEC은 21개 회원국이 납부하는 연간 분담금 및 자발적 기여금을 활용하여 APEC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창설하고 연 70만 달러(USD)를 공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관련 부처는 이 기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모색하고 있음.

- ▶ APEC 사업은 21개 회원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특히 회원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은 APEC의 중장기 비전 성취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APEC 사업은 APEC 기금사업과 자체 조달사업으로 나뉘며, APEC 기금사업의 경우 연 2회 상 하반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체 조달사업의 경우 연중 제안이 가능함.
 - APEC 사업 지원 기금 종류는 일반프로젝트 예산(GPA),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기금(TILF), APEC 지원기금(ASF) 등이 있음.
 - APEC 사업 절차는 ① 컨셉노트 준비 및 제출, ② 신청자격 확인 및 컨셉노트 심사, ③ 사업제안서 품질 평가, ④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⑤ 사업 종료 등 총 다섯 단계로 진행됨.

- ▶ 우리나라는 APEC 회원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지난 10년간 매년 7~15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APEC에서 편당을 받는 사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정부는 APEC 분담금 및 자발적 기금 외에도 'APEC 디지털혁신기금' 등 APEC 핵심 의제와 연관된 분야에 많은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APEC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APEC 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도 APEC 사업은 역내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디지털 사회, 포용적 성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사업을 우선순위로 승인할 예정이며, 따라서 한국도 관련 분야에서 APEC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간 전문가 간담회 등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고 협력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차 례

1. 머리말
2. APEC 사업 추진체계
 - 가. APEC 사업의 범위와 형태
 - 나. 사업 추진절차
3. APEC 사업 현황
 - 가. APEC 사업 현황
 - 나. 우리나라 제안 사업
4. 시사점 및 활용방안

참고문헌

1. 머리말

■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 협력,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해 매년 80~100개 정도의 사업을 편성하고 있으며, 1993년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로 약 2,200개의 사업이 추진됨.¹⁾

- 대부분의 APEC 사업은 역내 회원국간 지식공유 및 개발도상 회원국의 역량강화 사업 형태이며, APEC의 장기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됨.
- APEC은 21개 회원국이 납부하는 연간 분담금 및 자발적 기여금을 활용하여 APEC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 기업, 소비자, 정부의 디지털 경제 역량을 함께 구축해나가기 위한 마중물로서 'APEC 디지털혁신기금' 창설을 발표함.
- 우리나라는 'APEC 디지털혁신기금'에 연 70만 달러를 공여²⁾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APEC 관련 부처는 이 기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을 모색하고 있음.³⁾

■ APEC 회원국은 최근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 과정 등 사업체계 재정비를 완료하여 2019년부터 승인된 사업에 적용하기로 합의함.

- APEC 사업 제안 및 승인 기간은 연 2회 상·하반기에 추진되며 이전까지 승인된 사업은 그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이행이 종료되도록 하였으나, 2019년도에 승인된 사업부터는 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전체 사업 기간이 18~21개월로 늘어남.
- 이외에도 사업 제안,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위한 양식이 수정되었으며, 사업 제안 시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특정 로드맵, 프레임워크 등을 바탕으로 이행할 것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도록 강조함.
- 특히 APEC은 범분야적 사안(cross-cutting issue)이 포함된 사업 여부를 명시하게 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본고에서는 APEC 사업 현황 및 최근 수정·보완된 APEC 사업 추진체계를 정리하고, 향후 한국이 APE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APEC 사업 추진체계 및 사업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APEC 사업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APEC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1) "APEC PROJECTS Applying for Funding," APEC Project Management Unit 제3차 고위관리회의의 계기 사업관리 역량개발 세미나 발표자료 (2018. 8. 11).

2) 호주와 대만은 'APEC 디지털혁신기금'에 연 USD 35만 달러, 20만 달러를 각각 공여하기로 약속함.

3) '2019년도 제1차 대외경제전문가포럼 APEC 연구회' 논의 내용(2019. 4. 5).

2. APEC 사업 추진체계

가. APEC 사업의 범위와 형태

■ [사업 개요] APEC 사업은 21개 회원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며, 특히 회원국의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은 APEC의 중장기 비전 성취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APEC 회원국은 정상·고위급에서 제안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기술 트레이닝 및 노하우 전수 등과 같은 역량개발 사업을 통해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개발하고, APEC 정상·고위급에서 언급된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사업을 제안함.
- APEC 사업의 형태로는 워크숍, 세미나/심포지엄, 연구사업, 출판,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기 트레이닝 등이 있음.
- APEC 사업의 승인 및 관리는 APEC 고위관리회의(SOM) 산하 4개 위원회 중 하나인 예산운영위원회(BMC: 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에서 관리하며 연 2회 개최함.

■ [사업 자원] APEC 사업은 APEC 기금사업(funded project)과 자체 조달사업(self-funded project)으로 나뉘며, APEC 사업 지원기금에는 일반프로젝트 예산(GPA: General project Account),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기금(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APEC 지원기금(ASF: APEC Support Fund) 등이 있음.

- 일반프로젝트 예산(GPA)은 APEC 의제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사업 지원이 가능한 예산으로, 특히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개최국의 중점 의제에 기반을 두어 편당 우선순위를 결정함.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기금(TILF)은 보다 자유롭고 원활한 무역·투자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상 각료급 회의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한 사업과 오사카 행동지침에 언급된 TILF를 위한 15개 분야⁴⁾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함.
- APEC 지원기금(ASF)은 일반기금(general fund)과 특별기금(sub funds)으로 분류되는데, 일반기금은 APEC 회원국 간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별기금은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제시한 사용 용도에 맞게 지원함.
- 우리나라는 2018년도 정상회의에서 ‘APEC 디지털혁신기금’⁵⁾을 APEC 지원기금 중 특별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디지털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기업, 소비자, 정부가 디지털 경제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해나가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되기를 희망함.
- ‘APEC 디지털혁신기금’은 2019년 1차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계기에 창설되었으며, 하반기 사업 세션인 7월부터 기금 신청이 가능함.

4) 오사카 행동지침에 언급된 TILF를 위한 15개 분야: 관세, 비관세, 서비스, 투자, 표준·일치,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WTO 이행,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정보수집과 분석, 법·제도 정비.

5) ‘APEC 인터넷/디지털 경제 로드맵(2017년 정상회의 계기 공동선언문 부속서로 채택)’에 제시된 우선분야 대상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 개발도상국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제3차 고위관리회의에서 기금 설치를 제안함.

표 1. APEC 사업기금 종류

APEC 사업기금	기금 사용 목적	관련 포럼
일반프로젝트 예산(GPA)	- 모든 유형의 사업지원 가능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개최국의 중점 분야에 기반하여 지원 우선순위 결정	고위관리회의(SOM)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기금(TILF)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관련 정상 및 각료 지시사항 - 오사카 행동지침에 제시된 15개 분야 관련 사업	무역투자위원회(CTI)
APEC 지원기금(ASF)	[ASF 일반기금] -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마닐라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경제·기술 협력 중점 분야) 관련 사업)	무역투자위원회(CTI)
	[ASF 특별기금] -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조성 - 사용용도 지정, 기금별로 적합성 평가기준 상이	각 해당 포럼

자료: 「APEC 거버넌스 및 기금 - APEC 운영 현황」, 외교부 발표자료(2019. 1. 16)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나. APEC 사업 추진절차

■ APEC 사업은 APEC 기금사업 및 자체 조달사업(self-funded project)이 있는데, APEC 기금사업의 경우 연 2회 상하 반기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체 조달사업의 경우 연중 제안이 가능함.

■ APEC 사업은 [표 2]와 같이 ① 컨셉노트 준비 및 제출 ② 신청자격 확인 및 컨셉노트 심사 ③ 사업제안서 품질 평가 ④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⑤ 사업 종료 등 총 다섯 단계를 거쳐 진행됨.

표 2. APEC 사업 주기

단계	
1. 컨셉노트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컨셉노트 양식⁷⁾을 활용하여 작성(3쪽 이내) 당해 연도 APEC 핵심의제와 관련 포럼(작업그룹 혹은 위원회)의 우선순위 및 작업계획을 고려하여 작성 관련 포럼에 컨셉노트를 소개하고 회원국으로부터 의견과 공동 지원국(co-sponsorship) 여부 확인 관련 포럼 승인을 위한 컨셉노트 마감(Internal Submission Deadline)
2. 신청자격 확인 및 컨셉노트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EC 고위관리회의의 승인을 위한 컨셉노트 최종 마감(Final Submission Deadline) 예산운영위원회(BMC) 승인을 위해 컨셉노트 제출
3. 연구제안서 품질 평가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이 제공하는 양식⁸⁾을 활용하여 사업제안서(최대 12페이지) 제출 제안서 5대 평가 기준: △연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고위관리회의(SOM) 승인을 위해 사업제안서 제출 승인된 사업은 BMC에서 APEC 사업기금 승인여부 결정
4.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포럼과의 협의 아래 사업 수행 사업 모니터링: 사업 감독관(PO: Project Overseer)은 매년 4월 1일까지 모니터링 보고서 양식⁹⁾을 참고하여 제출
5. 사업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종료 보고서 양식¹⁰⁾을 참고하여 제출

자료: APEC(2018), *Guidebook on APEC Project Ed13*, 참고하여 저자 작성.

6) 인적자원 개발, 자본시장 개선, 경제 인프라 강화 등.

7) APEC(2018), *Guidebook on APEC Project Ed1*, Appendix A.

8) APEC(2018), *Guidebook on APEC Project Ed13*, Appendix B.

9) APEC(2018), *Guidebook on APEC Project Ed13*, Appendix E.

10) APEC(2018), *Guidebook on APEC Project Ed13*, Appendix F.

■ 최근 APEC 사업 추진체계가 재정비됨에 따라 APEC 사무국은 수정·보완된 컨셉노트, 사업제안서, 모니터링 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의 양식과 2019년부터 적용되는 수정사항을 소개함.

- APEC 컨셉노트와 사업제안서 양식은 이전 양식보다 간결하지만 사업요약, 목적, 결과물, 결과, 모니터링, 평가 등의 부문에서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함.
- 컨셉노트 관련 포라에 소개 시, 최소 2개 회원국으로부터 공동지원국 동의를 얻어야 BMC에 제출 가능함.
- 모니터링 보고서의 경우 역량 개발 및 중간평가에 관한 특정 질의에 대한 답이 요구되고, 결과보고서의 경우 질적 평가를 위해 APEC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포라에 제출하도록 함.
- 2019년도 하반기 사업 세션(project session 2)부터는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과거 12~18개월이던 사업기간이 총 18~21개월로 늘어남.

표 3. APEC 기금 관련 포라(for)라

기금	포라(for)라	펀딩 기준
일반사업계정(GPA) 기금	고위관리위원회(SOM)	당해/차기 의장국 주제 및 핵심의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TILF) 기금	무역투자위원회(CTI)	오사카 행동 의제
APEC 지원기금(ASF)_일반	고위관리위원회(SOM)	ECOTECH 마닐라 프레임워크
APEC 지원기금(ASF)_특별_연계성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특별 기금별 펀딩 적격성 기준 제시 ¹¹⁾
APEC 지원기금(ASF)_특별_농촌지역 경제개발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
APEC 지원기금(ASF)_특별_에너지 효율성	EWG	"
APEC 지원기금(ASF)_특별_FTAAP 및 GVC	무역투자위원회(CTI)	"
APEC 지원기금(ASF)_특별_인적안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
APEC 지원기금(ASF)_특별_혁신개발/경제혁신성장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
APEC 지원기금(ASF)_특별_MSME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	"
APEC 지원기금(ASF)_특별_구조개혁의제	경제위원회(EC)	"
APEC 지원기금(ASF)_특별_공급사슬연계	무역투자위원회(CTI)	"
APEC 지원기금(ASF)_특별_여성경제	여성과경제정책파트너십(PPWE)	"
APEC 지원기금(ASF)_특별_디지털혁신	ECSG/DESG ¹²⁾	" (2019년 창설된 기금)

자료: APEC(2018), *Guidebook on APEC Project Ed13*, 저자 번역.

■ 사업책임자(PO: Project Operator)는 BMC 승인을 위해 사업제안서(project proposal)를 제출하고 질적 평가(quality assessment) 과정을 거침.

- 질적 평가에서 사업 승인을 얻으면 승인레터(acceptance letter)에 사인 후 사업 이행
- 미승인 시, 사무국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책임자(PO: Project Operator)에게 평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

11) ASF 특별기금은 분야별 펀딩 적격성(eligibility) 기준이 포함된 문건 제시(<https://www.apec.org/Projects/Funding-Sources>).

12) 현재까지는(2019년 5월 기준) 전자상거래조정그룹(ECSG)이 기금 운용을 총괄하고 있으나,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경제운영그룹(DESG) 거버넌스 규정 확립 시 DESG가 총괄할 예정.

(justification)를 송부하고, PO는 평가 내용 확인 후 제안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출함.

- 사무국은 PO가 제출한 설명을 토대로 BMC에 재승인을 요청하고 미동의 시 APEC 질적 평가 항목(quality criteria)을 바탕으로 BMC에 미동의한 사유를 요청함(2주 기한).
- 재검토를 하였으나 해당 사업제안서가 APEC의 승인 기준에 못 미쳤을 경우 Two-Strike Rule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2번 질적 평가에서 실패한 제안서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APEC 사업 예산에는 인건비, 여비, 출판 및 출판물 홍보비, 워크숍/세미나 개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사업이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로 진행될 경우 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 지원이 가능하나, APEC 사업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 여비 지원이 가능한 회원국은 개발도상 회원국 11개국¹³⁾으로 제한함.
 - 일부 회원국은 경제 발전 정도가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 선정된 11개 개발도상 회원국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함.

3. APEC 사업 현황

가. APEC 사업 현황

■ [2019 가용 예산] 2019년도 APEC 사업 가용예산은 USD 1,410만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 중 60% 정도는 특정 분야에 한정된 기금인 Tied fund(USD 845만 8,000달러)에 해당되며, 나머지 40% 정도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지원 가능한 기금인 Untied fund(USD 571만 6,000달러)임.¹⁴⁾

-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은 기금(Untied fund)에는 APEC 일반사업계정(GPA)에 USD 195만 달러,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계정에 USD 140만 9,000달러, APEC 지원기금(ASF)에 USD 235만 7,000달러가 배정되어 있음.
- 특정 분야에 한정된 기금(Tied fund)에는 연계성, 농촌지역 경제개발, 에너지 효율성,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및 글로벌 가치사슬(GVC), 인적안보, 혁신개발/경제혁신성장,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 구조개혁의 제(RAASR), 공급사슬연계, 여성경제 등 다양한 분야가 있음.

13)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페루, 러시아, 태국, 베트남.

14) APEC Tied 지원기금의 총액은 한국에서 2019년도 SOM1 기간에 승인을 받은 디지털기금이 제외된 금액임. 디지털기금 공여를 약속한 호주와 대만의 실제 기여금은 확정되지 않음.

표 4. 2019년도 APEC 사업기금별 가용 예산(추정치)

기금 종류		예산(USD)
Untied 기금	일반사업계정(GPA) 기금	1,950,000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TILF) 기금	1,409,000
	APEC 지원기금(ASF)_일반	2,357,000
	총 untied 기금(40%)	5,716,000
Tied 기금	APEC 지원기금(ASF)_특별_연계성	821,000
	APEC 지원기금(ASF)_특별_농촌지역 경제개발	820,000
	APEC 지원기금(ASF)_특별_에너지 효율성	2,110,000
	APEC 지원기금(ASF)_특별_FTAAP 및 GVC	1,115,000
	APEC 지원기금(ASF)_특별_인적안보	420,000
	APEC 지원기금(ASF)_특별_혁신개발/경제혁신성장	527,000
	APEC 지원기금(ASF)_특별_MSME	224,000
	APEC 지원기금(ASF)_특별_구조개혁의제	724,000
	APEC 지원기금(ASF)_특별_공급사슬연계	1,113,000
	APEC 지원기금(ASF)_특별_여성경제	584,000
총 tied 기금(60%)	8,458,000	
총 기금		14,174,000

자료: APEC Document 2019/SOM1/013 저자 번역.

■ [2018년도 사업] 2018년도에 승인된 APEC 사업은 총 99개이며(승인율 47%), 이 중에서 목적이 제한되지 않은 기금(untied fund)으로 추진되어 종료되거나 기한이 마감된 사업은 총 42개임.

- APEC 기금을 활용한 42개 사업의 평균 승인 예산은 USD 11만 7,469달러이며, 평균 예산 집행률은 58%인 USD 6만 8,707달러임.
- APEC 예산운영위원회(BMC: Budget Management Committee)에서 2018년도에 승인한 예산 대비 실제 집행 금액이 58%에 불과하여 최초 예산 승인단계에서부터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옴.¹⁵⁾
- 프로젝트 운영상 고정비(임차료 등)와 변동비(여비 등)가 혼재해 있으며, 변동비 비중이 크므로 승인액 대비 집행액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함.

15) 2019년도 APEC SOM1 기간에 개최한 예산운영위원회(BMC) 회의 결과 내용 참고.

표 5. 2018년도 기준 종료/기한마감된 APEC 사업

(단위: USD)

기금 종류	종료된 사업	승인된 예산 (사업당 평균 예산)	실제 집행 금액	집행률
일반사업계정(GPA) 기금	17	\$2,099,781 (\$123,517 / 사업당)	\$1,169,765 (\$ 68,810 / 사업당)	56%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TILF) 기금	9	\$963,498 (\$107,055 / 사업당)	\$546,302 (\$ 60,700 / 사업당)	57%
APEC 지원기금(ASF)_일반	16	\$1,870,850 (\$116,928 / 사업당)	\$1,169,624 (\$73,102 / 사업당)	63%
합계	42	\$4,934,129 (\$117,479 / 사업당)	\$2,885,691 (\$68,707 / 사업당)	58%

자료: APEC Document 2019/SOM1/BMC/005 저자 번역.

■ [사업 질적평가] APEC은 사업제안서(project proposal)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질적평가프레임워크(QAF: Quality Assessment Framework)를 마련

- APEC 사무국은 2009년 심사 기준 강화를 위해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차원에서 정책 기준(policy criteria) 우선순위를 설정¹⁶⁾하여 2010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함.
- 사업제안서 QAF에는 사무국이 제시한 5개의 질적 평가 기준과 관련 문항이 제시됨.

표 6. APEC 사업제안서의 5가지 질적 평가 기준

평가 기준 항목	평가 내용	관련 문항
연관성(relevance)	APEC 및 관련 포럼의 목표 유효성, 기금 목적과의 연관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ow valid are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 Are the activities and outputs of the project consistent with the overall project goals? • Are the activities and outputs of the project consistent with the intended impact? • Are there clear capacity building benefits for APEC economies?
효과성(effectiveness)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are the likely changes following from this project? • What difference will the activity make to the target beneficiaries? • Beyond the target group, who else is likely to benefit? Are there multiplier effects that can be gained from this project? • What support exists for the project across APEC,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for multiple fora support to reinforce the benefits across a range of sectors and areas of work? • What avenues will be used to communicate and promote the project results, not only to member economies but also stakeholders and desired partners?

16) 보고르 목표, 지역경제통합, 구조개혁 등과 관련된 분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과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함. 이외에도 정상급·장관급 회의에서 언급된 우선순위 분야와 회원국의 관심은 적지만 사업을 통해 다수 회원국에 혜택이 가는 사업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설정함(2009/HRDWG31/103).

평가 기준 항목	평가 내용	관련 문항
효율성(efficiency)	사업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목표달성의 시의적절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 what extent are the objectives likely to be achieved and are they realistic? • What is the APEC value-add? Why is this a good project for APEC? • Based on the particular issue being addressed, is the proposed approach a sound way to achieve the objectives, and have other alternative approaches been examined? • Does the project take into account and or build on previous APEC activities with similar objectives?
영향력(impact)	사업의 효과, 사업 효과의 수혜자 범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are the intended effects over the longer term? • Does the project provide for methods to ensure benefits of a project will continue after the APEC project ceases? • Is there evidence of engagement with key stakeholders? • How does this project fit in with fora's priorities and are follow-on projects planned?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업 종료 이후 사업 효과의 지속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 the activities appear to be cost-efficient? • Do the activities comply with APEC project budget guidelines? • Would alternative approaches deliver the same result for less cost?

자료: APEC(2018), *Guidebook on APEC Projects Ed.13*, Appendix D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자발적 기여금] APEC은 2019년도 자발적 기여금 목표액을 490만 달러(USD)로 산정함.

- 2018년에는 한국,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이 총 분담금 외에 210만 달러를 자발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이는 2017년 기여금 280만 달러보다 감소한 금액임.
-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4년 동안 TILF 기금에 70만 달러를 기여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APEC 디지털혁신기금'에 지속적으로 연 70만 달러를 기여할 예정임.
- 자발적 기여금 납부액은 2016년 380만 달러, 2017년 280만 달러, 2018년 210만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임.

■ [비정부 기여금] 2019년도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개최된 예산운영위원회(BMC)에서 미국은 '정보 공유 차원으로 기업을 포함한 비정부 기관이 역량강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ASF에 기여금을 납입하는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예정'임을 밝힘.

- 중국은 APEC 회원국 외 다른 국가의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APEC 프로젝트가 비APEC 조직의 자금에 의해 이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함.
- 말레이시아는 미국이 제안한 기금의 출처가 불명확할 수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적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언급함.
- 미국은 관련 의제에 대하여 회원국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2019년도 제2차 예산운영위원회 회의 시 초안을 회람할 예정이라고 밝힘.

나. 우리나라의 제안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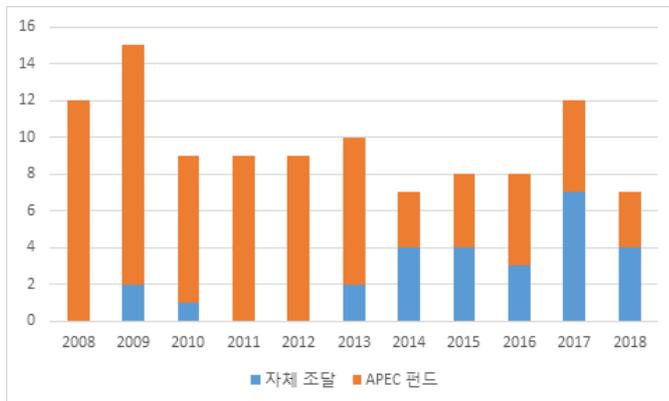
■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APEC 회원국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FTAAP 관련] 한국은 APEC의 FTAAP(아태자유무역지대) 실현을 목적으로 역내 회원국의 FTA 협상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통합(REI: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역량 강화(CBNI: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사업(3년 단위)을 201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제3단계(2018~20)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FTAAP CBNI 사업은 워크숍 혹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함.
 - 이제까지 한국에서 진행한 워크숍 주제는 △ 원산지 규정 △ FTA 이행 △ 분쟁해결 △ 원산지 및 무역원활화 △ 투자 서비스 양허안 작성 △ 무역구제 △ 지적권 등이 있으며, 2019년 6월에는 FTA와 RTA에 제시된 디지털 무역 및 전자상거래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 [서비스 국내규제] 한국은 회원국들의 서비스 규제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개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의 비구속적 국내규제 원칙 개발사업을 진행함.
 - 회원국간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고 역내 서비스 부문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의 국내규제원칙 개발사업을 제안하고 2019년도 각료회의 계기 승인을 추진할 예정임.
- [APEC STRI] 한국은 2016년 11월 정상선언문 부속서로 채택된 APEC 서비스경쟁력 로드맵의 일환으로 역내 서비스무역 규제환경을 파악하는 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개시함.
 - 2016년에 개최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ve Index)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APEC 자체 지수 개발 추진계획을 포함한 제안서를 승인받아 이를 전담할 실무그룹(technical group)을 설치함.
 - 한국은 실무그룹을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국과 함께 4가지 분야(유통, 통신, 컴퓨터, 물류 서비스)를 선정하여 우선 진행하고 2020년에 분야를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임.

■ [그림 1]과 같이 지난 10년간 한국은 매년 7~15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APEC에서 펀딩을 받는 사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한국이 2018년도에 제안한 APEC 사업은 총 7개인데, 3개는 ASF 특별기금(총 비용의 일부)으로 승인받았으며, 나머지 4개의 사업은 자체 조달(self-funded) 사업으로 승인 받음.
- 2018년도 한국 사업 중 ASF 특별기금으로 승인받은 3개의 평균 사업비용은 USD 18만 달러 정도이며, APEC으로부터 받은 기금의 평균 금액은 USD 8만 8,000달러 정도임.
-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최소 8개 이상의 승인된 사업이 APEC 펀딩을 받는 사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APEC 기금으로 진행한 사업의 수와 사업당 펀딩 받은 예산도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1. 한국 제안 APEC 사업(2008~18년)



자료: APEC Project Database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7. 2018년도 한국 제안 APEC 사업

(단위: USD)

사업명	펀드 종류	사업 예산 (APEC 펀드)	관련 포라(for)
FTAAP 지재권 역량개발 워크숍(3단계 REI CBNI)	자체조달		무역투자위원회(CTI)
강화된 기후 정보와 서비스로 불확실한 향후 과제 극복	자체 조달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지속가능한 국가 건강 안보 성취를 위한 역학(Epidemiologists) 질병 치료 인력역량 개발	자체 조달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APEC 선원 교육 훈련 네트워크(SENAP) 설립	ASF:연계성 +co - funding	\$242,416 (\$68,945)	교통실무그룹(TPTWG)
ICT 융합 스마트농업 연수 프로그램	자체 조달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PFS)
APEC 중소기업 포럼 2019(부제: How Big Data and AI Are Driving Business Innovation?)	ASF:MSME +co - funding	\$200,000 (\$100,000)	중소기업실무그룹(SMEWG)
디지털무역에서의 소비자 보호: 과제와 기회	ASF:IERG +co - funding	\$110,000 (\$95,000)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자료: APEC Project Database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시사점 및 활용방안

■ 우리 정부는 APEC 분담금 및 자발적 기금 외에도 ‘APEC 디지털혁신기금’ 등 APEC 핵심 의제와 연관된 분야에 많은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APEC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APEC 기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PEC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매년 APEC 분담금¹⁷⁾을 내고 있으며, 더불어 역내 무역 원활화 및 지역통합을 장려하기 위한 자발적

17) 의무분담금 총 5백만 달러 중에서 우리나라는 5.95% 분담률로 매년 30만 달러 정도를 납부하고 있음.

기여금 70만 달러(USD)를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며, 2019년에는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창설하여 연 70만 달러(USD)를 기여하기로 약속함.

- 새롭게 창설된 APEC 기금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APEC 관련 기관(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과 공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APEC 사업기금을 활용한 APEC 사업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APEC 사업은 회원국간 합의(consensus)만 있다면 제안한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별 완성도, 영향력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수행한 APEC 사업들의 분야별 정리, 사업 완료 후 영향력 평가 등을 종합한 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역내 사업의 중복성 탈피,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일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사업 컨셉노트 작성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참여 회원국 및 다양한 협력기관과의 논의를 거쳐서 사업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제안된 사업 분야가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때까지 다년간 사업(multi-year project)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관련 데이터센터 구축은 규제 조화, 정책적 노력 등과 같이 회원국간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APEC 사업이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속사업 지원이 가능한 기금을 창설 필요
 - 연속사업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연속사업에 할당된 별도의 기금(multi-year project funding)을 창설하여 장기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자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

■ 2019년도 APEC 사업은 역내 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 디지털 사회, 포용적 성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사업을 우선순위로 승인할 예정이며, 따라서 한국도 관련 분야에서 APEC 회원국 및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간 전문가 간담회 등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장(場)을 마련하고 협력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ASCC)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 중 학제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ASCC 온라인 협업 플랫폼(Online Collaboration Platform)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제안서가 소개됨.
 - 이 제안서의 목적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APEC 연구주제를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회원국간 연구협력뿐만 아니라 회원국 정부의 관심분야를 파악하여 동일한 관심 분야가 있는 회원국 정부·학계·업계 간 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협업을 통해 APEC 사업 내 중복 문제를 탈피하는 한편,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의 질(quality)을 높이는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KIEP**

참고문헌

[국문자료]

「APEC 거버넌스 및 기금 - APEC 운영 현황」 외교부 발표자료(2019. 1. 16).

「2019 제1차 예산운영위원회(BMC) 회의」 결과(2019. 3. 5).

「APEC 사업승인 절차」 외교부 배포자료(2010. 1. 13).

[영문자료]

APEC. 2018. *Guidebook on APEC Projects Ed.13*.

[웹사이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https://www.apec.org/>.

외교부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